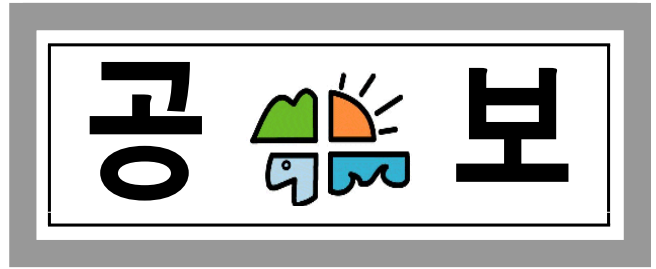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93호 2013년 8월 22일(목)

공 고

-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5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증원 : 2명
- 나. 시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 3명
- 다. 정원불부합 기능직공무원 직급 조정 및 한시정원 연장승인 기간까지 조정

2.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의 정원 증원 및 정원불부합 기능직공무원 직급 조정

- 1) 정원의 총수 : 549명 → 554명 (증 5명)
 - 집행기관의 정원 538명 → 543명
 - ※ 7급 151명 ⇒ 154명, 8급 114명 ⇒ 116명
 - 기능10급 10명 ⇒ 0명, 기능9급 35명 ⇒ 45명
- 2) 추가경비 소요현황(1년)

구분(직급)	인원(명)	연간예산액(원)	비 고
계	5	90,800,400	
7급	3	47,098,800	[9급 1호봉+(8급 5호봉⇒7급 4호봉 인상분)]×3명
8급	2	31,005,600	[9급 1호봉+(9급 3호봉⇒8급 2호봉 인상분)]×2명
기능 9급	10	12,696,000	(기능 10급 11호봉⇒기능 9급 10호봉 인상분)×10명

나. [별표 2]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일반직공무원】

- 8급 : 26.0%이내 → 27.0%이내 9급 : 2.5%이상 → 1.5%이상

【기능직공무원】

- 9급 : 34.0%이내 → 41.0%이내 10급 : 7.0%이상 → 0%

다. [별표 3]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 총계 : 549 → 554 일반직 계 : 434 → 439 6급이하 계 : 397 → 402

라. [부칙] 한시정원 특례 기간 연장 : 2015. 3. 31 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조직인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다. 그 밖의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주 소 : 우217-701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담당

— 전화 : 033-639-2139, 2140

— FAX : 033-639-2253

4. 참고사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총수 549명”을 “총수 55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38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543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특례) ① 제4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정원 12명은 2015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인원(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 및 상계 조정된 정원(7급 3명, 8급 2명)은 2015년 3월 31일 이후에는 최초 한시직급 책정 전 정원으로 환원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순증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은 2015년 3월 31일 이후에는 새로운 직급으로 조정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u>549명</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u>538명</u>	제2조(정원의 총수)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u>554명</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u>543명</u>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7.5%이내	27.0%이내	36.0%이내	<u>27.0%이내</u>	<u>1.5%이상</u>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6.0%이내	28.0%이내	25.0%이내	<u>41.0%이내</u>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0%	100%	12.5%이내	87.5%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0%이내	50%이상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직 급 별 \ 기 관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554	554				
정 무 직 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439	439				
2급						
3급						
4급	4	3		1		
5급	33	16	2	1	6	8
6급 이하 계	402	402				
별정직 계	2	2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2	2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6	6				
지도관						
지도사	6	6				
기능직 계	103	103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 나. 정원불부합 기능직급 조정

2. 주요내용

- 가. 정원 증원에 따른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1) 일반직공무원 본청 3명 증원 정원책정
 - 2) 사회복지직 동 주민센터 2명 증원 정원책정
- 나. 정원불부합 기능직공무원 직급 조정
 - 1) 기능직공무원 10급 정원 10명, 9급 이관 책정
- 다. 추가경비 소요현황(1년)

구분(직급)	인원(명)	연간예산액(원)	비 고
계	5	90,800,400	
7급	3	47,098,800	[9급 1호봉+(8급 5호봉⇒7급 4호봉 인상분)]×3명
8급	2	31,005,600	[9급 1호봉+(9급 3호봉⇒8급 2호봉 인상분)]×2명
기능 9급	10	12,696,000	(기능 10급 11호봉⇒기능 9급 10호봉 인상분)×10명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조직인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주 소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담당
- 전화 : 033-639-2139, 2140
- FAX : 033-639-2253

4. 참고사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	직 류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 계	합 계			549	348	11	37	86	67
	일 반 직			428	295	7	22	46	58
7 급	소 계			151	106	2	8	16	19
				0	0	0	0	0	0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1	0	0	0	0
8 급	소 계			114	87	1	7	7	12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8	3	0	0	0	5
기능직	계			35	15	3	2	10	5
	9급	운전	운전	5	2	1	2	0	0
		사무	필기	6	1	0	0	0	5
			전산	2	0	1	0	1	0
		조무/ 사무	조무 / 사무(워드)		8	7	0	0	1
	계			10	0	0	3	4	3
	10급	운전	운전	2	0	0	2	0	0
		사무	필기	3	0	0	0	0	3
			전산	1	0	0	1	0	0
		조무	조무		4	0	0	0	4

[개정안]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	직 류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 계	합 계			554	351	11	37	86	69
	일 반 직			433	298	7	22	46	60
7 급	소 계			154	109	2	8	16	19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전산주사보			1	1	0	0	0	0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3	3	0	0	0	0
8 급	소 계			116	87	1	7	7	14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10	3	0	0	0	7
기능직	계			45	15	3	5	14	8
	9 급	운전	운전	7	2	1	4	0	0
		사무	필기	9	1	0	0	0	8
			전산	3	0	1	1	1	0
		조무/ 사무	조무 / 사무(워드)		12	7	0	0	5
	계			0	0	0	0	0	0
	10 급	운전	운전	0	0	0	0	0	0
		사무	필기	0	0	0	0	0	0
			전산	0	0	0	0	0	0
		조무	조무		0	0	0	0	0

[별표]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관련)

직류	직급	직 류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 계	합 계		554	351	11	37	86	69
	정 무 직		1	1	-	-	-	-
	일 반 직		433	298	7	22	46	60
	별 정 직		2	2	-	-	-	-
	지 도 직		6	-	-	6	-	-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1	-	-	1	-
	일반직 또는 지도직		5	-	-	4	-	1
	기 능 직		103	49	4	5	37	8
	학예연구사		2	-	-	-	2	-
	정 무 직		1	1	-	-	-	-
정무	소 계		2	2	-	-	-	-
별 정 직	6급 상당	소 계	1	1	-	-	-	-
		비 서 실 장	1	1	-	-	-	-
	7 급 상 당	소 계	1	1	-	-	-	-
		화생방관리원	-	-	-	-	-	-
		체 육 지 도 사	1	1	-	-	-	-
	8 급 상 당	청 소 년 지 도 사	-	-	-	-	-	-
		소 계	-	-	-	-	-	-
		사회복지전문요원	-	-	-	-	-	-
		부 녀 봉 사 원	-	-	-	-	-	-
		청 소 년 지 도 사	-	-	-	-	-	-
지 도 직	소 계		6	-	-	6	-	-
	5급	농 촌 지 도 관	-	-	-	-	-	-
	6급 상당	농 촌 지 도 사	5	-	-	5	-	-
		생 활 지 도 사	1	-	-	1	-	-
4 급	소 계		1	1	-	-	-	-
	국 가 서 기 관		-	-	-	-	-	-
	지 방 서 기 관		1	1	-	-	-	-
4급 또는 5급	소 계		3	2	-	1	-	-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1	-	-	1	-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2	-	-	-	-
	소 계		32	16	2	-	6	8
5 급	지방행정사무관		10	8	2	-	-	-
	지방녹지사무관		-	-	-	-	-	-
	지방시설사무관		1	1	-	-	-	-
	지방의무사무관		-	-	-	-	-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6	3	-	-	1	2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3	1	-	-	1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1	-	-	-	1
	행정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시설사무관		2	-	-	-	-	2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1	-	-	-	-	1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1	-	-	-	1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1	1	-	-	-	-
	소 계		32	16	2	-	6	8

직류	직급	직 류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2	-	-	-	2	-
		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	1	-	-	-	-	1
		지방행정·지방시설·지방복지사무관	1	1	-	-	-	-
		지방행정·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학예연구관	1	-	-	-	1	-
6 급		소 계	110	76	2	6	16	10
		지 방 행 정 주 사	42	32	2	-	7	1
		지 방 복 지 주 사	1	1	-	-	-	-
		지 방 보 건 주 사	-	-	-	-	-	-
		지방해양수산주사	2	2	-	-	-	-
		지 방 시 설 주 사	7	5	-	-	2	-
		지방사회복지주사	-	-	-	-	-	-
		지 방 전 산 주 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2	2	-	-	-	-
		지 방 세 무 주 사	2	2	-	-	-	-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또는 세무주사	1	-	-	-	-	1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8	6	-	-	-	2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1	-	-	1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3	3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지방보건주사	2	1	-	-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0	9	-	-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2	2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8	4	-	-	-	4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공업주사	1	-	-	-	1	-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1	1	-	-	-	-
		사회복지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환경주사	1	-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시설주사	-	-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환경주사	1	1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1	-	-	1	-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공업주사	1	1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3	-	-	3	-	-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1	-	-	1	-	-
		지방공업주사, 지방환경연구사, 지방환경주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 지방공업주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행정주사	1	-	-	-	1	-

직류	직급	직 류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2	-	-	-	-	2
7	급	소 계	<u>154</u>	<u>109</u>	2	8	16	19
		지 방 행 정 주 사 보	74	50	2	1	6	15
		지 방 농 업 주 사 보	1	-	-	1	-	-
		지 방 녹 지 주 사 보	2	2	-	-	-	-
		지방해양수산주사보	3	3	-	-	-	-
		지 방 시 설 주 사 보	14	13	-	-	1	-
		지 방 통 신 주 사 보	1	1	-	-	-	-
		지방통신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기록연구사	1	1	-	-	-	-
		지 방 보 건 주 사 보	2	1	-	1	-	-
		지 방 세 무 주 사 보	5	5	-	-	-	-
		지 방 공 업 주 사 보	6	2	-	-	4	-
		지 방 간 호 주 사 보	3	-	-	3	-	-
		지 방 환 경 주 사 보	2	2	-	-	-	-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	-	-	2	-	-
		지 방 전 산 주 사 보	2	2	-	-	-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8	4	-	-	-	4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7	7	-	-	-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세무주사보	7	7	-	-	-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녹지주사보	1	1	-	-	-	-
		<u>지방행정주사보, 지방전산주사보</u>	<u>1</u>	<u>1</u>	-	-	-	-
		지방통신주사보, 지방전자통신주사보	1	1	-	-	-	-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1	-	-	-	1	-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연구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1	-	-	-	1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연구사	1	-	-	-	1	-
		지방보건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2	1	-	-	1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1	1	-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u>3</u>	<u>3</u>	-	-	-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간호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1	1	-	-	-	-
8		소 계	<u>116</u>	87	1	7	7	<u>14</u>
		지 방 행 정 서 기	51	41	1	-	2	7
		지 방 녹 지 서 기	3	3	-	-	-	-
		지 방 농 업 서 기	2	-	-	2	-	-
		지방해양수산서기	2	2	-	-	-	-
		지 방 시 설 서 기	6	6	-	-	-	-
		지 방 공 업 서 기	5	2	-	-	3	-
		지 방 환 경 서 기	1	1	-	-	-	-
		지 방 보 건 서 기	5	3	-	2	-	-
		지 방 통 신 서 기	-	-	-	-	-	-
		지 방 간 호 서 기	1	-	-	1	-	-
		지 방 세 무 서 기	8	8	-	-	-	-
		지 방 의 료 기 술 서 기	1	-	-	1	-	-
		지 방 전 산 서 기	2	2	-	-	-	-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u>10</u>	3	-	-	-	<u>7</u>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녹지서기	1	1	-	-	-	-

직류	직급	직 류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급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7	6	-	-	1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전산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	4	4	-	-	-	-
		지방환경서기 또는 지방보건서기	1	-	-	1	-	-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보건서기, 지방간호서기	1	1	-	-	-	-
		지방전산서기 또는 지방통신서기	-	-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환경서기, 지방공업서기	1	-	-	-	1	-
		지방해양수산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시설서기, 지방공업서기	1	1	-	-	-	-
		지방시설서기, 지방공업서기	-	-	-	-	-	-
9급		소 계	17	7	-	-	1	9
		지방행정서기보	3	1	-	-	1	1
		지방시설서기보	-	-	-	-	-	-
		지방세무서기보	-	-	-	-	-	-
		지방전산서기보	-	-	-	-	-	-
		지방복지서기보	-	-	-	-	-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4	6	-	-	-	8
		지방공업서기보	-	-	-	-	-	-
일반 또는 별저		소 계	2	1	-	-	1	-
		지방학예연구사 또는 지방별정 6급	2	1	-	-	1	-
일반 또는 지도		소 계	5	-	-	4	-	1
		춘지도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행정사무	1	-	-	1	-	-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업주사	3	-	-	3	-	-
		농촌지도사, 지방농업주사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1	-	-	-	-	1
6급		계	103	49	4	5	37	8
		소 계	5	4	-	-	1	-
		통신	1	1	-	-	-	-
		전화 상담	-	-	-	-	-	-
		전기	1	1	-	-	-	-
		기계	-	-	-	-	-	-
		영사	-	-	-	-	-	-
		열관리	-	-	-	-	-	-
		운전	1	1	-	-	-	-
		화공	1	-	-	-	1	-
		위생	-	-	-	-	-	-
		사역	-	-	-	-	-	-
		워드	-	-	-	-	-	-
		필기	1	1	-	-	-	-
		전산	-	-	-	-	-	-
		조무	-	-	-	-	-	-
		지도	-	-	-	-	-	-
		소 계	28	16	1	-	11	-

직류	직급	직 류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 능 직	7 급	통 신	통 신	2	2	-	-	-	-
		전화 상담	전화상담	1	1	-	-	-	-
		전 기	전 기	3	1	-	-	2	-
		기 계	기 계	2	-	-	-	2	-
			영 사	1	1	-	-	-	-
		열관리	열 관 리	1	1	-	-	-	-
		운 전	운 전	6	5	-	-	1	-
		화 공	화 공	1	1	-	-	-	-
			위 생	-	-	-	-	-	-
		사 무	위 생	-	-	-	-	-	-
			사 역	-	-	-	-	-	-
			위 드	1	-	1	-	-	-
		조무 / 사무	필 기	2	1	-	-	1	-
			전 산	1	-	-	-	1	-
			조 무/사무(워드)	7	3	-	-	4	-
			지도/사무(워드)	-	-	-	-	-	-
	8 급	소 계		25	14	-	-	11	-
		통 신	통 신	1	1	-	-	-	-
		전화 상담	전화상담	1	1	-	-	-	-
		전 기	전 기	4	-	-	-	4	-
		기 계	기 계	2	2	-	-	-	-
			영 사	-	-	-	-	-	-
		열관리	열 관 리	1	-	-	-	1	-
		운 전	운 전	8	5	-	-	3	-
		화 공	화 공	-	-	-	-	-	-
			위 생	1	-	-	-	1	-
		사 무	위 생	1	-	-	-	1	-
			사 역	1	-	-	-	1	-
			위 드	-	-	-	-	-	-
	9 급	조무 / 사무	필 기	2	1	-	-	1	-
			전 산	3	3	-	-	-	-
			조 무/사무(워드)	1	1	-	-	-	-
			지도/사무(워드)	-	-	-	-	-	-
		소 계		<u>45</u>	15	3	<u>5</u>	<u>14</u>	<u>8</u>
		통 신	통 신	-	-	-	-	-	-
		전화 상담	전화상담	-	-	-	-	-	-
		전 기	전 기	1	1	-	-	-	-
		기 계	기 계	5	-	-	-	5	-
			영 사	-	-	-	-	-	-
		열관리	열 관 리	1	1	-	-	-	-
		운 전	운 전	<u>7</u>	2	1	<u>4</u>	-	-
	급	화 공	화 공	-	-	-	-	-	-
			위 생	-	-	-	-	-	-
		위 생	위 생	-	-	-	-	-	-
			사 역	-	-	-	-	-	-
			위 드	6	2	1	-	3	-
		사 무	필 기	<u>9</u>	1	-	-	-	<u>8</u>
			전 산	<u>3</u>	-	1	<u>1</u>	1	-
		조무 / 사무	조 무/사무(워드)	<u>12</u>	7	-	-	<u>5</u>	-
			지도/사무(워드)	1	1	-	-	-	-

직류	직급	직 류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10 급	소 계		-	-	-	-	-	-
		통 신	통 신	-	-	-	-	-	-
		전화 상담	전화상담	-	-	-	-	-	-
		전 기	전 기	-	-	-	-	-	-
		기 계	기 계	-	-	-	-	-	-
			영 사	-	-	-	-	-	-
		열관리	열 관 리	-	-	-	-	-	-
		운 전	운 전	-	-	-	-	-	-
		화 공	화 공	-	-	-	-	-	-
		위 생	위 생	-	-	-	-	-	-
			사 역	-	-	-	-	-	-
		사 무	위 드	-	-	-	-	-	-
			필 기	-	-	-	-	-	-
			전 산	-	-	-	-	-	-
		조 무	조 무	-	-	-	-	-	-
	지 도		-	-	-	-	-	-	
학예연 구사	계			2	-	-	-	2	-
	6급 상당			-	-	-	-	-	-
	7급 상당			2	-	-	-	2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기능·기구와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시민의 안정성 및 편리성을 제고
- 나. 한시정원 연장승인에 따른 명문화

2. 주요내용

- 가. 안전총괄부서의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추가
 - 1) 명칭변경 : 재난산림관리과 → 안전재난산림과
 - 2) 사무분장 추가 : 안전정책 총괄·조정관련 사항 및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한 사항 등
- 다. 주민생활지원실 및 여성가족과 사무분장 조정(이관)
 - 1)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 주민생활지원실 → 여성가족과
- 라. [별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 사업소 위치 도로명주소 사용
- 마. “부칙” 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 1)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존속기간 : 2015년 3월 31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조직인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주 소 : 우217-701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담당
- 전화 : 033-639-2139, 2140
- FAX : 033-639-2253

4. 참고사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난산림관리과”를 “안전재난산림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랑인보호

제10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제19조 중 “재난산림관리과”를 “안전재난산림과”로 하고,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안전재난산림과장”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제19호(중전의 제15조) 중 “재난재해”를 “안전총괄, 재난재해”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관련 사항
2. 안전문화운동, 안전공동체 육성관련 사항
3. 안전지수, 안전지도 및 안전수준 진단·분석관련 사항
4. 산업안전 등 특수안전 및 특사경 관리 등 사회안전관련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에 따른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실·과·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민원봉사과, 희망일자리추진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u>재난산림관리과</u> , 속초발전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을 둔다	제3조(실·과·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민원봉사과, 희망일자리추진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u>안전재난산림과</u> , 속초발전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을 둔다
제5조(주민생활지원실)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2. < 생략 > 3. <u>부랑인보호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u> 4. ~ 15. < 생략 >	제5조(주민생활지원실)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2. < 생략 > 3. <u>부랑인보호</u> 4. ~ 15. < 생략 >
제10조(여성가족과)여성가족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15. < 생략 > 16. <u>< 신설 ></u>	제10조(여성가족과)여성가족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15. < 생략 > 16. <u>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u>
제19조(<u>재난산림관리과</u>) <u>재난산림관리과</u> 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u>< 신설 ></u> 2. <u>< 신설 ></u> 3. <u>< 신설 ></u> 4. <u>< 신설 ></u> 1. ~ 14. < 생략 > 15. <u>그 밖에 재난재해 및 민방위, 산림, 산불,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u>	제19조(<u>안전재난산림과</u>) <u>안전재난산림과</u> 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u>안전정책 총괄·조정관련 사항</u> 2. <u>안전문화운동, 안전공동체 육성관련 사항</u> 3. <u>안전지수, 안전지도 및 안전수준 진단·분석관련 사항</u> 4. <u>산업안전 등 특수안전 및 특사경 관리 등 사회안전관련 사항</u> 5. ~ 18. < 생략 > 19. <u>그 밖에 안전총괄, 재난재해 및 민방위, 산림, 산불,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u>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7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수도사업소	<u>속초시 조양동 817번지</u>
수질환경사업소	<u>속초시 대포동 535번지</u>
대포항개발사업소	<u>속초시 대포동 426번지의 5</u>
속초시박물관	<u>속초시 노학동 736-1번지</u>
속초항물류사업소	<u>속초시 동명동 53-3번지</u>
환경자원사업소	<u>속초시 대포동 49번지의 39필지</u>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7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수도사업소	<u>속초시 조양동 떡밭재로 181</u>
수질환경사업소	<u>속초시 대포동 해오름길99</u>
대포항개발사업소	<u>속초시 대포동 대포항1길 20</u>
속초시박물관	<u>속초시 노학동 신흥2길 16</u>
속초항물류사업소	<u>속초시 동명동 동명항길 27</u>
환경자원사업소	<u>속초시 대포동 방축길 60</u>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안전기능 부서와 사무분장, 그 외 일부 부서의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시민의 안정성 및 편리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안전총괄부서장의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추가

1) 명칭변경 : 재난산림관리과장 → 안전재난산림과장

2) 사무분장 추가 : 안전정책 총괄·조정관련 사항 및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한 사항 등

다. 주민생활지원실 및 여성가족과 사무분장 조정(이관)

1)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 주민생활지원실 → 여성가족과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조직인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다. 그 밖의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주 소 : 우217-701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담당

— 전화 : 033-639-2139, 2140

— FAX : 033-639-2253

4. 참고사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안전재난산림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부랑인보호

제10조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무연고사망자 처리

제19조 중 “재난산림관리과”를 “안전재난산림과”로 하고,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안전재난산림과장”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58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64호까지로 하고, 제64호(종전의 58조)중 “재난재해”를 “안전총괄, 재난재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지수 관립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4. 재난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 등 특수안전에 관한 사항
6. 특사경 등 사회안전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실·과·단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 관광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 속초발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민원봉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u>재난산림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	제3조(실·과·단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 관광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 속초발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민원봉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u>안전재난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
제5조(주민생활지원실)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8. < 생략 > 9. <u>부랑인보호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u> 10. ~ 72. < 생략 >	제5조(주민생활지원실)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8. < 생략 > 9. <u>부랑인보호</u> 10. ~ 72. < 생략 >
제10조(여성가족과)여성가족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63. < 생략 > 64. < 신설 >	제10조(여성가족과)여성가족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63. < 생략 > 64. <u>무연고사망자 처리</u>
제19조(<u>재난산림관리과</u>) <u>재난산림관리과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신설 > 2. < 신설 > 3. < 신설 > 4. < 신설 > 5. < 신설 > 6. < 신설 > 1. ~ 57. < 생략 > 58. <u>그 밖에 재난재해 및 민방위, 산림보호, 산불예방,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u>	제19조(<u>안전재난산림과</u>) <u>안전재난산림과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2. <u>안전문화운동 및 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u> 3. <u>안전지수 관립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u> 4. <u>재난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5. <u>산업안전 등 특수안전에 관한 사항</u> 6. <u>특사경 등 사회안전 등에 관한 사항</u> 7. ~ 63. < 생략 > 64. <u>그 밖에 안전총괄, 재난재해 및 민방위, 산림보호, 산불예방,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u>